

해외 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주요 유의사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목 차

머리말 / 1

요 약 / 2

I. 해외 자원개발 투자현황 / 5

II. 유형별 피해사례 / 6

- | | |
|----|----------------------------|
| 6 | 1. 현지 브로커들의 사기 |
| 9 | 2. 현지 정부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
| 14 | 3. 투자 대상 및 현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III. 해외자원 개발 시 주요 유의사항 / 19

- | | |
|----|----------|
| 19 | 1. 아시아 |
| 27 | 2. C I S |
| 30 | 3. 중 동 |
| 32 | 4. 중남미 |

머리말

연일 치솟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자원민족주의로 대표되는 자원 보유국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으로 해외 자원개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내 기업들은 앞 다투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그 투자대상 및 국가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자원개발 투자가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일부 투자자 기업들은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피해사례는 일반적으로 잘 공개되지 않고 쉬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후속 피해사례의 예방이 쉽지 않다.

이에, KOTRA는 무역관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현지 피해사례를 입수하여 유형별로 정리하고, 각 국가별 자원개발 진출 시 유의사항을 정리 하고자, 본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다.

해외 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기간과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 고려사항들이 있다. 성급하고 무리한 투자는 피해사례로 이어지며, 특히 현지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으로는 1) 현지 브로커로부터 사기를 당하는 경우, 2) 현지 정부 및 주민들과의 갈등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3) 투자대상 및 현지 환경, 제도 등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각 국가의 제도와 특징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자료에서는 주요 자원개발 유망국가별 진출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국가에 자원개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요 약

아시아

○중국

- 광업자원 종류에 따른 선별 투자허가
- 외자유치 정책에 부합하는 개발계획 필요

○인도네시아

- 브로커를 통한 사기 피해 빈번
- 광산은 운송인프라스트럭처 눈여겨봐야
- 부처 간, 지방정부와의 이견으로 불확실성 높음

○말레이시아

-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면허권 반드시 획득해야
- 원유개발과정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파키스탄

- 외국인은 설비와 자금만 투자 가능해 피해 발생
- 후진적 법률시스템으로 소송도 여의치 않음

○호주

-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은 중소 규모 광업투자 기회가 대부분
-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투자 바람직

○미얀마

- 공기업과 합작만 가능, 민간기업 독자 진행은 없음
- 고질적 전력난, 열악한 교통·통신 걸림돌

○인도

- 합의 내용이라도 여론에 따라 이행 안 되는 경우 있음
- 소송기간이 길어 소송을 통한 프로젝트 방해 사례 많음

CIS 및 중동

○러시아

- 현지기업과 합작회사 설립을 통한 자원개발권 획득 필수
- 불명확한 법률 기준에 대한 불만 큼

○카자흐스탄

- 장비와 기자재 조달 어려움
- 지역전문가 영입이나 정보 입수 힘든 상황
- 관련 법 세부규정 불투명하고 일관성 떨어져 어려움 많음

○이란

- 외국인 투자보장 미흡, 외국인 배척 사상 있음
- 달러거래 중단 등으로 파이낸싱 어려움

○쿠웨이트

- 자원개발에 외국인 지분 전혀 인정 않음
- 기술공급을 통한 수수료 수수 방식밖에 없어 매력 떨어짐

남미

○브라질

- 기회와 위협이 동시 존재, 위험관리 필수
- 소수 대기업이 자원별 개발권 거의 독점상태
- 정부와 현지기업과의 긴밀한 제휴관계 필요

○페루

- 지역주민과 갈등으로 반드시 협상 거쳐야 하는 경우 많음
- 소규모 기업 참여가 쉽지만 성급한 투자 피해사례도 많음
- 환경보전 규정 엄격해 자칫 투자허가 취소될 수 있음

○파나마

- 환경단체 반대로 차질 빚는 프로젝트 많음
- 환경부담금으로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기도 함

I. 해외 자원개발 투자현황

- 2007년 한 해 동안 유전 및 광물개발 사업을 신고한 업체는 총 8개, 올 해 들어서도 지난 4개월 동안 22개가 추가됨.
- 2006년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은 21억불로 전년대비 89% 증가 하였으며, 2007년에도 77%로 증가한 약 37억불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
 - '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시작, 총 369개 사업에 진출하여 '06말 현재 218개 사업 진행 중

(‘06말 기준)

구 분	유전(석유·가스)		일반광물	
	진출국	사업	진출국	사업
○ 진행사업	30	83	33	135
- 생 산	15	26	10	31
- 개 발	8	9	21	49
- 탐 사(조 사)	21	48	21	55
○ 종료사업	37	83	25	68
총 진출사업	47	166	43	203

(자료원 : 지식경제부)

- '06년 말 현재 총 투자실적은 103.8억불이며, 이중 90.4%인 93.8억불을 회수하였음.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01	'02	'03	'04	'05	'06	계
석유가스	투자금액	3,569	437	561	642	953	1,901	8,063
일반광물	투자금액	1,687	66	91	131	154	186	2,315
총 투자액		5,256	503	652	773	1,107	2,087	10,378

(자료원 : 지식경제부)

- 이 같은 해외자원개발 열기는 자원개발업체의 '무분별한' 투자를 야기함으로써 자칫 현지에서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II. 유형별 피해사례

1. 현지 브로커들의 사기

가. 인도네시아

**존재하지도 않는 KP지방정부 광구 등기권 /Kuasa Pertambangan) 나 소유권이 없는
남의 KP를 자기 것처럼 속이거나, 이중으로 계약**

- 대표적인 사기유형은 지방공기업들이 보유한 KP를 브로커들이 개입해 이들로부터 지분을 매입하고 개발자본이 없어 재판매 한다는 식으로 잠재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임.
- 대부분의 석탄관련 투자사기가 '깔리만탄'지역이나 수마트라에 집중되어 있는데,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해당지역에 대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이기가 용이하기 때문임.
-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PMA는 KP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마치 지분을 인수해 소유권을 가지는 것처럼 속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채굴 장비를 제공하거나 자본을 투입해 산출물을 나누겠다는 계약일 뿐 소유권을 나누는 계약은 아님.
- 브로커들은 투자자들을 데리고, 미리 매수해 둔 공무원들 만나거나 말이 안 통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현지답사를 완료했다는 기분을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매수를 위해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몇 만불에서 몇 십만불 단위의 선투자를 요구함.
- 일단 소액이라도 자금이 투입되면서 투자자가 말려들면 브로커들은 상황이 생각처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표시하면서 추가 자금투입을 요구함.
-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투자건에 대해 재검토를 하게 되지만, 이미 브로커는 건질만큼 건진 상황이므로 아쉬울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자세를 바꾸어 버림.

〈인도네시아 브로커 사기 사례〉

한국의 A사는 인도네시아의 브로커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의 석탄광 투자에 대한 사업 참여를 제안 받고 현지투자진출을 추진하였음. 인도네시아 브로커는 인도네시아인이 광업권을 소유한 석탄광에 대하여, 현지변호사를 통하여 관련서류 일체 및 회사등록서류를 갖고 있으며 법률적 검토까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현지 지방정부가 승인하는 석탄광의 경우 외국인이 합작투자한 회사는 직접 광권 소유가 되지 않고 컨트랙터로만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브로커는 광권 취득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등 현지 법률체제와 맞지 않는 방법을 제시해 의구심을 들게 하였음. A사는 상대방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 검증라인을 통해 확인을 시도하기로 결심하고 직접 석탄광 소유자와 접촉을 함. 이에 따라 광산개발관련 서류를 실사하기 위하여 무역관 소개 변호사와 현지 실사 출장을 하게 됨. 현지에서 석탄광 관련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서류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또한 한국업체를 동행한 변호사가 품질조사서의 객관성 여부를 추궁하자, 동 서류를 별도의 외부기관 조사 없이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위조 서류임을 실토함. 아울러 광물매장 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자예정지였던 광산이 주 광맥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등, 동 사업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투자계획을 전면 보류하기에 이룸. 다행히 한국업체가 직접 투자단계 이전에 사실 확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광산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비용의 손해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석탄광 사업 추진 제안을 받은 이후 진위여부에 이르는 단계에까지 현지 출장 등 업무추진을 위한 간접적인 비용의 손해가 발생하게 됨.

나.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공개 입찰과정에서 정권실세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입찰을 따주겠다는 브로커에게 사전 로비자금을 탈취당하는 사례

- 카자흐스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가스·광물자원 등은 공개입찰 방식에 의거 정부가 인쇄매체(신문)에 입찰공고를 함.
- 동 입찰공고에 의거 내국 또는 외국의 개인 또는 법인이 입찰 참여를 하고 입찰을 따게 되면, 카자흐스탄 정부와 합법적인 법률계약을 통해 자원 탐사 또는 개발(생산) 권리를 얻게 됨.
- 이와 같은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입찰과정에서 경험이 없는 브로커들이 카자흐스탄 정치권 고위층과의 친분관계가 있고, 자원개발 공개입찰 목록을 가지고 있는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접근해 입찰을 따주겠다는 명목으로 사전 로비자금을 요구하면서 실제 입찰에서는 낙찰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일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카자흐스탄 브로커 사기 사례〉

최근 국내 중견기업 A사는 카자흐스탄의 광산을 인수해 달라는 제안을 받음. 제법 큰 회사가 시추를 하고 있고, 사전 사업성평가 레포트도 확인한 결과 사업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 이에 먼저 양해각서(MOU)를 체결, 보증금을 걸고 현지 조사를 함. 그 결과 외부 매장량 평가기관들이 제출한 보고서상의 광물의 품위와 기대 매장량이 당초 브로커가 제시한 매장량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나왔고, 상업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외에도 해외자원개발에 목말라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브로커들은 검증도 되지 않은 자원개발을 재료로 각종 로비를 하고 있음.

2. 현지 정부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가. 페루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투자가의 본의 아닌 손실을 입는 사례

환경을 의식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외국인 투자 이탈 사례

- 페루정부는 정치적으로 자원개발과 관련, 외국인투자가에 대해 규제 또는 차별을 하고 있지 않으며 세계 모든 나라의 투자가에 文豪를 개방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가 생겨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첫째는 치안불안, 두 번째는 페루 정부의 지나친 과세 정책을 꼽을 수 있음.
- 특히, 국경으로부터 50km 거리 이내에 광업, 토지, 산림, 수자원, 연료, 에너지 등을 직접 간접적으로, 개인으로든 단체로든, 개발하거나 개발할 권리를 얻을 수 없으며 그렇게 할 경우 국가가 이를 剝脫함.
- 과거에 광물가격이 낮아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던 페루 정부는 이제는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자 최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외국인 투자자의 반발을 사기도 함.

〈페루 정부 사회적 책임기금 요구 사례〉

2007년 7월 집권한 Alan Garcia 정부는 出帆 時에는 자원의 國有化나 외국인 투자제한 조치 등은 없을 것이며 페루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이익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집권 후부터 외국계 자원개발 기업이 페루정부와의 계약 체결 후 국제자원가격폭 등으로 暴利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발적으로 개발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음. 이에 따라 자원개발기업들은 자원개발협회(SNMPE, Sociedad Nacional de Minería, Petróleo y Energía)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협상을 거쳤으며 43개사가 2007년부터 5년 동안 매년 5억솔(약1.6억불)씩 총 25억솔(약8억불)을 페루정부에 獻納기로 한 바 있음. 기업체 自發的 사회적 책임 부담을 강조함으로써 2007년에는 5억4천7백만솔(약 1억8천2백만불)의 사회적 책임기금을 모았으며 2008년에는 그보다 대폭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회적 책임 기금은 광업분야 투자기업체로부터 모으는 기금으로 기업체의 사회적 寄與(빈곤퇴치)라는 측면에서 받는 것이며 매년 에너지광업부 장관이 관계 업체와의 대화를 통해 명목상으로는 “자발적인 방법”으로 釀出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페루 주민들과의 갈등 사례〉

2002년 6월 Tambogrande 주민 중 94%가 반대해 Manhattan Minerals (캐나다)사가 추진하던 San Lorenzo Valley, Piura에서의 金鑛 개발이 물거품이 된 바가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Newmont(미국)사의 Yanacocha광산이 주민의 심한 반발에 직면해 Cajamarca의 Cerro Quilish 金鑛 개발을 중단해야만 했음. 이와 같이 환경을 의식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외국인 투자 이탈은 페루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음.

나. 파키스탄

정부의 후진적 행정 시스템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계약의 무효화

- 합작투자 시 파키스탄측이 투자하는 부분은 대개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이며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외국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후진적 법률 시스템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해결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임.
- 또한 파키스탄은 재정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를 공급자 금융방식(BOO/BOT)에 의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행정 서비스 마인드의 부재,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하기 사례와 같은 분쟁발생의 위험이 상존함.

〈파키스탄 정부의 입장 변경 사례〉

‘Thar’ 지역은 카라치에서 북동쪽으로 380km 떨어진 신드주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석탄매장량은 1,750억 톤으로 추정되나 대부분 저급의 갈탄으로 공장연료 및 발전용으로 적합. 파키스탄과 중국 정부는 동 지역에 대한 공동 석탄 광구개발 및 생산된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 건설에 합의하였고 지난 2002년 4월에 Riaz Hussain Khokhar 당시 주 중국 파키스탄 대사와 Ye Qing Shenhua Group 회장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 이후 심층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05년 1월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사업이 중단된 2007년 1월까지 동 중국기업은 약 2천5백만 불을 투자. 그러나 양측은 발전소에 대한 용수공급 책임소재 문제로 한 차례 갈등을 겪은 데 이어 파키스탄 측이 동 발전소로부터 구입할 전기 요율 문제가 심화되며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 파키스탄의 최대전력 회사인 WAPDA는 kw당 5.7센트의 구매요율을 제시한 반면 중국기업 측은 13센트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다. 인도

언론 및 여론 추이에 따라 정부와의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

- 인도 정부와의 서면 합의된 내용이라도 언론 및 여론 추이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할 것.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길며 투자 단계에서 정부당국이 약속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확률이 높음.
- 예를 들면 광역탐사권, 상세탐사권, 광권 획득의 단계에서 주정부와 중앙정부 내 여러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행단계에서 지역 업체나 경쟁사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크게 지연됨.
- 인도는 소송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소송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방해할 수 있음.
- 인도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정부소유 토지 내 장기간 거주해온 지역 주민들이 끊임없는 무력시위를 감행할 경우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움.
- 법률적 해결이 어려우며 소송을 통한 결론이 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림.
- 언론은 지나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도하며, 지역 언론의 경우 지역주민을 자극하는 루머를 여과 없이 신문에 게재하는 경우가 많음.

〈인도 주정부와의 갈등 사례〉

2005년 6월 국내기업 P사는 6,200헥타르에 걸친 순더가르(Sundergarh)지역 칸다다르 (Khandadhar)광산에서 향후 30년에 걸쳐 철광석 6억 톤을 공급받는다라는 조건으로 1,200만 톤 규모의 제철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MOU를 오리사주와 체결함. (투자액 120억불) 주정부와의 MOU체결내용에는 사업내용 및 계획(투자금포함), 부지공급관련 사항, 자원 공급방안, 용수관련 사항, 환경규제 관련사항, 인센티브 관련사항, 인프라건설계획 (도로, 철도, 항구)등이 포함되어 있음. 2006년 12월 P사는 오리사 주정부로부터 상세 탐색권 (Prospecting licence)을 획득함. 2007년 4월 현재 아직까지 광권확보가 되고 있지 않음. 부지확보 및 보상과 관련된 지역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도 폭력세력과 공산주의 기반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지역주민을 선동하여 각종 폭력사태의 희생자가 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음. P사의 사례는 인도에서의 대규모 자원개발프로젝트 추진이 매우 어렵고 위험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서 정부소유의 부지를 정부보증 하에 불하받는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보상 및 이주는 해당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음. 투자반대세력들이 무력을 이용하고 법질서 자체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기업이 사태를 추스리기가 쉽지 않음. 한편 정부와의 합의된 광권 인도 역시 각종 인허가 절차와 여론의 행방 때문에 지연되고 있음.

〈인도 주정부의 고의적 지연 사례〉

국내건설사 D사는 94년 마드야프라데쉬주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립 및 운영(BOT)키로 주정부와 합의하고 95년 전력공급계약 체결하였음.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 입찰보증금(전체 프로젝트금액의 2%)을 납부할 것을 강요받고 98년 2500만 불을 주정부구좌에 예치함. 하지만 개발프로젝트가 축소되고 사업자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프로젝트가 진행불가상태가 빠지게 되자 동사는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입찰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2000년 8월) 주정부는 입찰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결국 D사는 소송을 제기함 (2000년 10월 최초공판) 법원에서는 분할 상환할 것을 판결하였으나 주정부가 판결 불이행함에 따라 법정모독죄로 추가제소 (2003년 6월). 2007년 2월말에 입찰보증금 원금 전액을 회수하였으며 현재 이자에 대한 회수소송 진행 중. 동 사례는 인도 사법체계의 문제점과 우리 기업의 추가 피해가능성이 상존함을 알리는 사례이며 동 사는 피해 발생 후 10년 동안 적극적으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치며 수많은 공판과 재판을 거쳐 사건발생 10년 후에야 겨우 원금회수에 성공함. 동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 주정부(주전력청)는 고의적으로 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무한정 시간을 끌며보는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이에 고등법원 판사가 동조함. 동 사는 고등법원 판사의 미온적 태도를 시정하기 위해 법정모독죄로 제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동 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음 (고의적 판결 회피) 인도에 경우 재판을 통한 계약이행에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들이 피해를 감수하고 철수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와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고 있음.

라. 카자흐스탄

자원민족주의에 근거한 신규 법률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 사례

- 최근 자원민족주의의 목소리가 가장 높아진 곳은 중앙아시아, 특히 이 지역 최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이 그 중심에 서 있음.
- 카자흐스탄은 지난해 10월 외국 유전개발 투자자들과의 계약조건 변경 및 종료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법안은 투자기업이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사업 중단은 물론, 나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더욱 쉽게 만드는 게 골자임.
- 그 이면에는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불리하게 이뤄졌던 계약조건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 법안 통과 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최대 유전인 카사간(매장량 700억 배럴) 개발 문제를 놓고 국제컨소시엄 '아지프 KCO'와 지분 재협상을 하고 있는 중임.

3. 투자 대상 및 현지 제도,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

가. 아르헨티나

- 사기피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투자대상에 대한 이해 부족과 투자자들의 성급한 투자성향을 들 수 있음. 자원투자가 대세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묻지마식 투자를 추진하다보니 투자대상에 대한 이해는 뒷전이고, 빨리 먼저 매물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앞서고 있음.
- 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필요
 - 광업개발은 다른 사업 분야와는 다르게 광산개발에 대한 장기간의 Knowhow를 필요로 한다. 지하 수십 미터부터 수천 미터까지 가능성만을 보고 탐사를 시작하여야 하기 때문임.
 - 아래 사례와 같이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진입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는 경우 본의 아닌 피해를 볼 수 있음.

〈아르헨티나 광구 정보 사전 조사 부재 사례〉

B사는 2006년 아르헨티나 광업법에 의거 2006년 Juan Felipe Ibarra지역의 광업권을 획득함. B사는 1년 반에 걸친 기초 지질조사 결과 백금, 금, 팔라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밝힘. 한국기업인 A사는 2007년 7월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개발사업에서 광업분야 사업확장을 위하여 현지기업인 B사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MOU체결함. 당시에는 자체적인 광물사업성 검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B사의 보고서를 토대로 MOU를 체결함. A사가 본 계약 체결 전에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2차에 걸친 아르헨티나 및 캐나다 연구소에 샘플검사를 의뢰한 결과, B사의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남. 이에 따라 한국기업 A사는 현지기업 B사와 MOU를 파기함. 본 계약 후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지분과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불하였어야 했음.

나. 알제리

현지 법규에 어두워 개발권 양도 계약이 무효화 되는 사례

- 에너지 관련 계약으로 획득한 권리를 알제리 에너지부의 허가 없이 제 3자에 양도할 경우 이는 무효이며 향후 입찰 참가 불가능해짐.
- 에너지 관련 모든 발표(원유 발견 소식 등)시 사전에 알제리 에너지부와 협의, 가능하면 공동발표 형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안전함.

〈알제리 현지 법규 이해 부족 사례〉

캐나다의 Saharan Resources 사가 수주한 알제리 남부 타마라셋 우라늄 개발권을 Landmark 사에 양도, 후에 이를 인지한 알제리 에너지부가 이 계약을 무효화시킴.

다. 이란

현지 관행 및 정보 등을 몰라 개발 중단한 사례

-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장체계(과실송금보장) 미흡 및 불안정하고 미온적인 협조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든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해 줌.
- 더욱이 2005년 이후 집권한 보수성향의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는 외국기업의 이란진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최고지도자의 외국인투자유치의지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협조가 부족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이란 정부의 느장 행정 사례〉

영국의 금광개발업체인 RIO TINTO사가 이란 쿠르디스탄 지역 금광개발을 위해 진출하였으나, 12백만 불 상당의 투자액을 손실한 후 현재는 개발을 중단한 상태에 있음, 구체적인 개발중단 사유를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이란정부의 관료적 느장행정진행 및 비협조, 현지정보부족,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장 미흡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라. 인도네시아

후진국에 대한 막연한 선입관 및 현지 언어 이해 부족으로 인해 투자위험을 높이는 사례

-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이므로 실력자와 손이 닿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지방정부와 MOU라도 체결이 되거나 지자체장과 면담이라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오해가 무리한 투자를 유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어가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음.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인장이나

서명이 가짜인 서류가 넘쳐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직인이 찍힌 정부문서라면 일단 믿어버렸음. 또한 허가시스템에 대해서도 국유지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고, KP와 같은 허가권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가 불가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임했음.

마. 카자흐스탄

투자자가 카자흐스탄의 열악한 자원개발 투자환경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해 피해를 당하는 사례

-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 딜을 하다보면, 카자흐스탄 정부가 International Standard에 맞지 않게 자국의 실익에 따라 조건 자체를 수시로 바꿔 현지 자원개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실례로 2005년 11월에 제정한 지하자원이용법에 따르면,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광구(석유·가스·광물)를 매도할 경우 우선 선취권을 카자흐스탄 정부가 보유하게 됨. 석유와 가스는 국영회사인 Kazmunigas에게, 광물 자원은 에너지광물자원부에게 우선 선취권이 돌아가게 됨.
- 2007년 1월 중에 개정된 지하자원이용법에 따르면, 공개입찰방식으로 입찰을 따서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에서 2년간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됨.
- 상기와 같이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 관련법이 자국의 이권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고, International Standard에 부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개발 투자환경이 극히 열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개발 투자자가 경험이 없는 브로커만 믿고 카자흐스탄 자원개발 투자를 했다가 사전 로비자금만 날리는 경우가 있음. 또한, 실제 광구 보유 개인 또는 법인과 계약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후에도 카자흐스탄 정부의 우선 선취권 조항을 검토하지 않아 계약금만 날리고 구매한 광구가 정부로 귀속되는 사례는 실제 발생함. 기타 2년간 제 3자 매도 제한 조항 때문에 매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바. 터 키

현지 합작선의 부도, 도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

- 터키에서의 자원개발 투자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국내기업이 국제적인 전문정보와 경험부족으로 인해 사업 가치를 잘못 판단할 수 있음.
- 현지 합작선의 부도, 도주 경우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터키 현지 합작선 부도 사례〉

광업진흥공사와 국내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과 터키 현지기업의 합작 투자로 이루어진 터키 오하넬리 지역 크롬광 합작사업은 터키측이 전적으로 광산경영을 책임지고 아국 컨소시엄은 투자와 그에 따른 수익 분배를 받는 형태로 이루졌음. 세계 크롬시장의 장기 침체와 금융비용과다에 따른 경영악화가 지속되던 중 '96. 8월 현지합작선이 5천만US\$의 부채를 남기고 합작사를 제3자에게 매각 해외도주 이후 일체 경영활동이 중단되고, 99년도에 사업을 종결하고 철수. 터키측 합작선의 경영진이 본 프로젝트 외에도 다수의 사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실패를 고의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판단됨. 본사업의 실패 원인 중 표면적으로는 외부환경요인인 시장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참여자의 국제적인 전문정보와 경험부족에 의한 잘못된 사업가치 판단에 기인하는바가 더욱 큰 것으로 판단됨. 해외자원개발 경험이 없는 회사가 신규진출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합작사에 대한 이해와 정보조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

III. 해외자원 개발 시 주요 유의사항

1. 아시아

가. 중국

○ 정부 정책방향의 수시 변경

-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의 경우, 기업소득세율이 국내, 외자기업 구분 없이 통일되는 등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기존의 우대혜택이나 사업여건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책변화 시 사업채산성의 악화 리스크가 존재함.

○ 사업철수 및 투자자금의 회수 곤란

- 중국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투자 사업을 정리하려 해도 철수가 용이하지 않고 철수 시 자금회수가 어려움. 중국투자는 처음 진출단계는 물론이고, 사업을 도중에 변경하거나 청산하는 단계에서도 당국의 인허가가 반드시 요구됨. 더욱이 합자의 경우는 사업 중단에 대한 중국 측 출자자의 동의가 있어야 허가기관에 사업청산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외자기업들은 철수 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중국 측에 양도하거나 몸만 빠져 나오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

□ 중국의 자원개발 관련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사전 조사 필요

- 2005년 말 현재 중국에서 발견된 광물자원은 171종이며, 그중 매장량 확인된 것이 159종임.
-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지열 등 10종이 에너지 광물자원이며, 금속광물자원은 철, 망간, 동, 알루미늄, 연, 아연 등 54종임.
- 중국은 국내 자원개발을 위하여 외상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05년 기준 발급된 탐사허가증은 206건, 개발허가증은 187건에 달하며, 현재 중국에서 광산 탐사 및 개발을 시행하는 외국인의 광산수는 이미 80개를 초과함.

- 하지만 중국은 광종에 따라서 외상투자를 선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함.

구분	구체적 분야
장려 대상	▶ 석탄층가스 탐사 및 개발, 갱내에서 발생하는 가스 이용(합자, 합작에 국한) ▶ 석유·천연가스의 리스크 탐사 및 발굴 (합자, 합작에 국한) ▶ 저 침투 유전개발 (합자, 합작에 국한) ▶ 석탄 및 부존자원의 탐사, 개발 ▶ oil shale, oil sand, 일반중유 및 고급중유 등 석유자원 탐사 및 발굴 ▶ 철, 망간 광산의 채굴 및 광산 선정 작업 ▶ 심해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합작에 국한)
제한 대상	▶ 특종 희소 결핍한 석탄의 탐사, 채취(중국측 대주주) ▶ 중정석 탐사, 채취(합자, 합작에 국한) ▶ 귀금속(금, 은, 백금류) 탐사, 채취 ▶ 금강석 등 귀금속 및 비금속광석의 탐사와 채굴 ▶ 인(磷)의 채취와 선풍작업 ▶ 보론 마그네시아 및 보론마그네시아 철광 채굴 ▶ 천청석 채굴 ▶ 바다망간 결핵, 바닷모래 채취(중국측 대주주)
금지 대상	▶ 텅스텐,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의 탐사와 채굴 ▶ 희토금속의 탐사, 채굴과 선풍 ▶ 방사성 광산의 탐사, 채굴과 선풍

- 따라서 對중국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동 분야에 대한 중국의 외자 유치정책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임.

나. 인도네시아

- 최근 자원주가 테마로 떠오르면서 한국의 여유투자자금이 경쟁적으로 인도네시아로 몰려오고 있어, 브로커들에게는 사기행각을 벌이기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특히 한국에 있는 투자자가 아는 사람에게 투자 권유를 받고 관심이 생겨 인도네시아에 처음 오는 경우나 투자경험은 없는데 잠시 체류한 경험만 믿고 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에 뛰어들려는 투자자들이 주 타겟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공공기관을 활용해 사전정보조사 및 투자대상처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현지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이나 컨설팅기업들 섭외해 적절한 대가를 주고 충실한 가이드 역할을 해 주도록 활용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임.
- 직접 투자처를 물색하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브로커가 아닌 제3자를 통해 현지 여건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객관적인 정보 소스를 발굴해 투자대상에 대한 재검증을 계속 시도해야 함.
- 광산의 경우, 매장량이나 품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채굴된 광물의 운송인프라인데, 수마트라나 깔리만탄 지역의 경우 인프라가 취약해서 항구까지 끌어오는 인프라 건설비용이 투자비용보다 더 많은 경우가 다반사라고 함. (허가권을 적극적으로 팔려고 나서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음)
- 최근 석유 대체자원으로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몇 년 동안 한국으로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로 몰려오고 있는 중인데, 투자환경이 양호한 농장 매물이 고갈되면서 자트로파나 카사바와 같은 다른 작물에 대한 투자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음.
- 그런데, 자트로파의 경우 추출되는 기름에 독성이 있어 식용유나 기타 용도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지 않는 한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투자위험요소를 간과하거나 가려둔 채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만일 바이오에너지 시장이 제대로 창출되지 않거나 시장창출이 지연된 경우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임.
- 또한 카사바 농장 투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몇십년간 무상임대를 하기로 했다는 MOU를 앞세워 투자유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지방정부에서는 고용창출과 재원확보라는 차원에서 MOU를 쉽게 체결해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속력이 약할 수 있음.

- 또한 MOU를 체결했다고 해도 향후 사업진행시 토지수용이나 사업진행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발표된 규모의 경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 투자청의 투자승인서나 토지매입만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HGU라는 토지사용(경작)허가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지방정부에서 토지를 확보해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부풀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간혹 HGU를 인수했다고 하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HGU 권한만 양도할 수는 없으므로 HGU를 가진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는 투자형태임.
- 앞으로 광물자원개발을 규정하게 될 '신광업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에서 산림보호지역과 광업지역을 놓고 정부부처 간에 이견이 노정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광업권에 대한 이견이 커지고 있어 동 법률의 공포되기까지는 인도네시아 정부 광업정책이나 광업투자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인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됨.
- 광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탐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광업권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공지가 되지 않아서 취소된 광업권에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 불법채굴이 행해지면 광업권 취소사유가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안되면 근로자들의 불법채굴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투자 후에도 이를 잘 관리해야 함.

다.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의 탄광 지역을 탐사하기 이전, 먼저 중앙 정부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말레이시아 정부는 개발업자에게 주석광산 등 버려진 광산을 재생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주정부에게 더 많은 광산 라이선스를 발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모든 주는 환경부서, 지질미네럴부서와 같은 연방 에이전트와 상담하여 광산 라이선스를 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라이선스를 취득하는데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됨.

-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기업은 탄광 지역 환경 및 생산 상황에 관한 개발 결과 보고서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함.
- 채굴에 적합한 지역을 찾은 후에, 기업은 중앙정부 측에 채굴임차권을 신청할 수 있음.
- 환경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이후에 채굴을 시작할 수 있음.
- 자원 환경부에 약 5%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함.

○ 팜유개발 시 유의사항

- 말레이시아에 팜유 공장이나 정제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먼저 MIDA (Malaysian Industrial Development Authority)의 라이선스를 받아야 함.
- 공장 및 정제시설 설비를 구축한 이후, 기업은 말레이시아 팜유위원회에 (팜유) 공장과 정제에 관한 라이선스를 제출하고, 이후에 팜유를 추출하고 정제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승인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됨.
- 라이선스를 취득한 이후, 기업은 재배지에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이후 기업은 말레이시아 팜유청(MPOB/Malaysian Palm Oil Board)에 월 단위로 생산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MPOB에 지급할 로열티는 톤당 RM11부터 Rm14까지임.
- 준수해야 할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음.
“라이선스 없이 생산 및 판매를 하는 행위에 관한 금지 조항, Form MPOB L3 없이 팜유를 이동하고 배송하는 행위에 관한 금지 조항, 절도에 관한 금지 조항, 부정 팜유 생산물에 관한 금지 조항, 소재와 장비 사용에 관한 금지 조항, 불법 계량대 및 콜렉션 센터 사용에 관한 금지 조항”

○ 고무개발 시 유의사항

- 말레이시아 내 고무 농장을 소유한 기업은, 고무 채취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고무위원회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음.

- 라이선스 취득에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 기업이 고무 채취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 기업은 말레이시아 고무 위원회에 생산 상태를 포함한 내역을 월별 보고서로 제출해야 함.
 -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기업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톤 당 평균 14센트, RISDA(말레이시아 고무위원회/ Rubber Industry Smallholder Development Authority)에 톤 당 10센트, 그리고 말레이시아 고무청에 톤 당 4센트를 지불해야 함.
- 원유개발 시 유의사항
- 원유는 Petronas가 100% 자회사인 Petronas Carigali Sdn Bhd, 여러 석유·가스 다국적기업과 생산분배계약(PSC; Production Sharing Contracts)을 통해 말레이시아 내에서의 탐사, 개발, 생산 활동을 함.
 - 각 계약은 전체 생산원유의 분배를 조건으로 PSC계약자가 자금 조달과 탐사, 개발,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
 - R/C(비용대비 수익) PSC는 PSC계약자들이 일정한 비용목표를 달성할 경우 비용회수를 가능케 함. 즉, 계약자의 수익성이 낮을 경우 PSC 계약자의 생산지분을 높이고, 계약자의 수익성이 향상될 경우 PETRONAS의 생산지분이 늘어나도록 함.

라. 파키스탄

- 합작투자 및 BOO/BOT 방식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파키스탄 비즈니스맨들은 자신의 능력을 약간 과장되게 말하는 경향이 많고 전문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므로 실제로 합작투자 능력이 있는가를 세심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합작투자 시 파키스탄측이 투자하는 부분은 대개 토지, 건물 등 고정자산이며 외국인은 나머지 설비와 자금 등을 투자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외국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후진적 법률 시스템으로 인해 소송을 통한 해결 역시 여의치 않은 실정임.

- 또한 파키스탄은 재정부족으로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를 공급자 금융방식 (BOO/BOT)에 의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행정 서비스 마인드의 부재,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상기 사례와 같은 분쟁발생의 위험이 상존함.
- 따라서, 합작투자 및 BOO 방식의 사업추진 시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현지 치안확보에 만전
 - 치안문제는 파키스탄에서 외국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문제로 충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나 차량절도 등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 및 종교 갈등에 따른 유력인사 암살, 폭탄테러 역시 자주 발생함.
 - 또한 대부분의 광물자원 매장지역이 벨로치스탄, NWFP 등 치안이 매우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바, 현지 관련 프로젝트 진출 시 현지 공관 및 무역관에 현지 파견 인원 현황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거주지 선정에 주의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 함으로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마. 인도

- 합작투자 시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보할 것.
- 인도 정부와의 서면합의된 내용이라도 언론 및 여론 추이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식할 것.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길며 투자 단계에서 정부당국이 약속한 사항은 상황에 따라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예를들면 광역탐사권, 상세탐사권, 광권 획득의 단계에서 주정부와 중앙정부 내 여러 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행단계에서 지역업체나 경쟁사의 소송에 휘말릴 경우 프로젝트 진행이 크게 지연됨.
- 인도는 소송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소송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방해할 수 있음.

- 인도는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정부소유 토지 내 장기간 거주해온 지역주민들이 끊임없는 무력시위를 감행할 경우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움.
- 법률적 해결이 어려우며 소송을 통한 결론이 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림.

바. 미얀마

- 미얀마는 1988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해 12개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원개발투자의 경우에도 미얀마 광업부(Ministry of Mining) 산하의 공기업인 Mining Enterprise 혹은 미얀마 에너지부(Ministry of Energy) 산하 공기업인 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이하 MOGE)와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함.
- 미얀마의 자원개발은 정부기관 산하 공기업과 합작을 통해서만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민간기업(민간인)이 정부로부터 자원개발에 대한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투자를 유치할 경우 허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미얀마 정부 혹은 KOTRA양곤무역관, 현지 주재 대사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의 고질적인 전력난, 열악한 교통, 통신 인프라 등은 미얀마에 대한 자원개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사. 호주

- 호주의 광업부문 신규투자는 2005~2006년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는 광업부문 투자 결정에는 타당성 조사 등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90년대 초반을 전후하여 본격적 탐사활동 등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함.

- 한국은 90년대 중반이후 호주에 대한 광업 투자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으나 곧이어 맞은 외환위기로 인해 상당기간 동 부문에 공백기가 발생하였음.
- 이에 비해 미국, 유럽, 일본 등은 80년대 이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생긴 노하우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최근에는 중국 국영기업들의 투자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현재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중소규모의 광업 투자 프로젝트 투자 기회가 대부분이라고 판단됨.
- 이에 반해 국내기업은 대부분 광업투자 결정을 위한 노하우 및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 이러한 이유로 호주 자원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분산을 위한 국내기업간, 기업-정부기관 간, 국내-해외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에 의한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C I S

가. 러시아

-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지 기업과의 Joint Venture 설립을 통하여 지하자원개발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이미 지하자원 개발권을 획득하였고,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의 긴밀한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임.
- 러시아에서 천연자원 프로젝트 추진 시 발생하는 위반사례 관련, 전문가들은 불명확한 법률 기준에 대해 빈번히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고 함.
- 어떤 경우 프로젝트 추진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는 기업들이 모든 실수를 만회할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음. 필요에 따라서 정부 관리들은 감시기관을 대신하여 규칙 위반사실에 대하여 강온 양면의 선택을 구사함.

나. 헝가리

- 헝가리의 경우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적어 외국계 진출회사의 경우 독일, 아일랜드 등 서유럽 기업에 집중돼 있음.
 - 종류별 가용 매장량 협소로 신규 기업의 진출 메리트가 적어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에너지 메이저 회사 진출이 없음.
 - 따라서 외국계 회사의 Joint 개발 오퍼 등 대응 시에도 진입 여건 및 진출분야에 대한 외부 컨설팅기관을 통한 시장성 검토가 우선
- 자원개발의 경우 초기투자자금의 규모가 매우 큰 반면 시장여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이 탄력적이지 못해 자원의 국제시장 시장여건에 따라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음.
 - 헝가리의 구리 총 매장량은 약 8억 톤으로 추정되지만 가용매장량은 1만 톤에 불과함에도 구리 가격의 급등 시 채굴가능성 대비 시장성 검토 없이 투자논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구리가격 안정 후 현재는 투자논의 조차 없는 상태임.
- 지자체 환경 단체의 지역 내 유치에 대한 반대가 매우 심해 부수적인 비용 초래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 내재
 - 헝가리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의 경우 지역 환경단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반대로 채광지로부터 가공공장까지 파이프 운송 장비 설치 후 경영 가능한 경우도 있었음.
- 헝가리의 경우 단순 자원 채굴의 경우 투자인센티브 혜택이 없으며 채굴 후 가공은 제조업 분류에 따라 제조업 내 투자인센티브 케이스별로 적용함.
- 또한 조세(Mining Fee)의 경우도 원유 12%에서 기타 고형자원의 경우 2%까지 상이하게 적용됨.

다. 카자흐스탄

- 카자흐스탄은 내륙국가인 관계로 장비 및 기자재 조달의 어려움이 많아 시멘트와 골재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장비 및 자재를 러시아와 유럽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임.
- 사회주의 체제의 잔존으로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강해 지역전문가 영입 및 정보입수가 힘든 상황인 바,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의 경우 국제 금융기관의 차관공사를 제외하면 적기에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워 입찰이 실시되더라도 참여가 힘든 상황임.
- 카자흐스탄은 현지 관련 업체 및 관계 인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함. 전통적으로 혈맹관계 및 부족관계(Juz)의 성향이 강하며 구소련의 붕괴로 이들의 영향력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카자흐스탄의 세제·법제는 대체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나 세부규정이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법의 실제 적용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이 많음. 광업권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마감 일주일전에 입찰공고가 되는 등 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장비·기자재를 러시아와 유럽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나, 내륙국가인 관계로 조달에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됨.
- 구소련 당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보수적 성향과 적당주의식 근무스타일이 아직 만연하는 등 노동 효율성이 낮음. 한국 기술인력 고용에 필요한 노동비자, 노동허가 발급이 카자흐스탄 국내 노동시장 보호(건설 분야 등도 동일한 상황)를 위해 쿼터제로 묶여 있어 기술인력 수입에 애로가 많음.
- 사회주의 체제의 잔존으로 필요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비밀주의와 관료주의가 강해 정보입수가 힘든 상황임.
- 광물의 경우 일부 고가의 금속을 제외하고 철도, 도로 등 인프라 미비로 인근 구소련 국가, 일부 유럽국가, 중국 등으로 수출지역이 제한되어 있음.

- 자원개발사업 안정기에는 다양한 사업단계, 투자규모, 대상지역, 대상광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위험 및 기대수익을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됨.

3. 중동

가. 이란

- 외국인 투자보장의 미흡 및 외국인 배척사상
 - 외국인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장체계(과실송금보장) 미흡 및 불안정하고 미온적인 협조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든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
 - 더욱이 2005년 이후 집권한 보수성향의 아흐마디네자드 행정부는 외국기업의 이란진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최고지도자의 외국인투자유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정부 협조가 부족해 외국인투자자들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현지 관련기관의 구체적인사업개발의지 부족
 - KOTRA 현지 무역관에서는 광물자원개발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IMIDRO (Iranian Mines & Mining Industries Development & Renovation Organization)를 방문하여, 한국기업들의 이란 광물자원 분야 진출 및 투자의지를 설명한 바 있음.
 - IMIDRO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등 외국기업의 투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IMIDRO 담당자는 투자희망기업이 먼저 이란투자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하여 가부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 파이낸싱의 어려움
 - 최근의 미국 및 UN의 대 이란 경제제재는 동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달러화 거래 중단 및 이란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이 매우 힘든 상황

나. 이집트

- 이집트는 '08년 1차 12개의 광구 개발권을 국제 입찰을 통해 선정예정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권 매각 대금을 통해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데 활용하고 있음. '08년 들어 식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어 이집트 정부는 자원 개발권 매각을 통한 저소득층 보조금을 늘릴 계획으로 광구권 매각에 보다 총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일부 광구의 경우 이익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정치적 불안에 따른 자원의 국유화 현상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 무바라크 대통령이 1982년 이후 5번째 연임을 통해 권력을 집권하고 있으나 임기가 2010년이면 끝나고 노령인 관계로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한 실정임. 하지만, 뚜렷한 차기 후계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무바라크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정치적 불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08년 들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대학 교수 등의 시위가 빈발해지고 있는데 무바라크 이후 이슬람 과격 세력의 집권, 군부 집권 등의 정치적 혼란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함.
- 정치적 혼란의 경우 불가항력적 요소로 다국적 또는 다자간 국제기관을 통한 사업 참여 방식 또는 보험시장의 적절한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쿠웨이트

- 쿠웨이트의 자원은 에너지 자원으로 원유가 매장량 1,015억 배럴로서 세계 매장량의 8.5%를 차지하여 사우디, 이란, 이라크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가스의 경우, 국내 사용량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부족한 실정인데 2006년 34조 입방피트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하여 2015년까지는 상업 생산을 통해 국내 소요 충당 및 해외 수출까지 계획하고 있음.

- 그러나, 쿠웨이트는 자국 자본이 풍부하여 이러한 자원개발에 외국인 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이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은 기술 공급을 통한 수수료 수수 방식밖에 없어 매력이 떨어짐.
- 그리고 인근국 이라크의 자원개발을 위해서 쿠웨이트 기업들이 외국기업과 합작 등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이 없이 막연한 구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함.
- 특히 이라크 관련 사업은 현재 이라크 국내 치안 및 정세 등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 단계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특히 극도로 치안이 불안한 쿠웨이트와 인접한 이라크 바스라 지역 해당)
- 또한 해외 자원 개발을 빌미로 국내에서 투자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간혹 동 자원 개발 건이 현지 대사관에서 승인한 건이라든지 하여 과장 혹은 과대 포장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현지 공관 등에서는 이러한 자원개발 계약건 등에 대해 단순 영사확인(현지 공식 등록된 기업과 한국기업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단순 확인스탬프)만 하며 해당 개발건의 실재 여부나 성사 가능성 등에 대해 보증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러한 건은 필히 현지 해당 공관 등에 직접 확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중남미

가. 브라질

- 브라질의 자원개발 시장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함. 국제 원자재 수요 증가 등 시장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자원개발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이 급속하게 늘어나거나 주요 자원소비국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국제원자재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함.

- 따라서 고수익-고위험의 투자 대상인 브라질의 자원개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투자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브라질이 기본적으로 모든 자원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이 각 자원별 개발권을 거의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투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자원 개발 사업은 일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투자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는 특성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높은 편임. 따라서 외국기업은 브라질 내 자원개발기업과 지분 분산 참여 방식에 따른 전략적 합작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브라질은 1978년 이후 에너지 개발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나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이 정부와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Petrobras)의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페트로브라스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거나 수입이 가능한 상황임.
- 자원 및 에너지 개발 산업에 관한 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브라질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 점은 우리 기업이 브라질 내 현지 파트너를 선정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최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우리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로 비즈니스 능력이 떨어지는 파트너가 접근해올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함.

나. 파나마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략자원은 메이저 자원회사들의 기초 연구가 이미 선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지분확보 등을 통해 메이저 회사들이 광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임.
- 종류별 가용 매장량이 적은 경우에는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에너지 메이저 회사 진출이 없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외부컨설팅 기관의 객관적인 시장성 평가 자료를 입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대부분의 자원개발 사업은 환경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음. 자원 매장 지역이 국가지정 자연보호구역이거나 토착민 거주지역일 경우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발업체가 고스란히 안게 될 가능성 높음.
- 환경부담금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여지가 있는 중요한 사항임. 아울러 자원개발의 경우 초기투자자금의 규모가 매우 커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가 필요하며 현지 법제도와 정치적인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많음.
- 중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심각한 정치 불안으로 인해 여러 차례 격변기를 지내고 있는 상황임. 최근에는 사회주의로의 회귀와 함께 자원 국유화라는 초유의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음.
- 근본적 국수주의를 앞세워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 국유화가 일어날 경우 장기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던 업체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
- 자원개발 관련 투자 시 각 국의 정치 환경 변화를 민감하게 체크해야 하며 반드시 국가 대 국가 차원의 협약이 필요함.

다. 페루

- 외국인 자원개발 분야 투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규제는 없으나 일부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업체가 지역 주민과의 葛藤으로 협상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음.
- 페루는 인근 중남미국(예 : 콜롬비아)과는 달리 자원개발 분야 개방도가 매우 높고 1990년대 이후 민영화를 통해 내외국인 기업 간의 차별을 완전히 철폐시켜 놓고 있어 대규모 기업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도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여기에 바로 리스크도 있다고 할 수 있음.
- 기술수준이나 해외영업 경험이 높지 않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현지 파트너의 말만 듣고 잠재적인 투자가능지역에 상세한 검토를 行하지 아니하고 성

급한 투자를 하지만 막상 사후 이윤 및 원금회수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현지 既진출한 한국 업체로부터 사전 조언이나 협력을 얻는다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

- 페루는 개발도상국으로서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은 국가여서 자원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및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에 큰 역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자원개발 투자 시 이러한 환경보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큰 곤란을 겪게 되며 투자허가 취소, 제재 등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 특히 페루가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도 미국은 페루 측에 환경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페루도 이에 동의해 마침내 협정문을 개정하고 페루 의회는 이를 2007년 6월에 통과시킨 바 있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자원개발 분야 투자 시 내외국인 구별 없이 이러한 환경보존 노력을 엄격히 요구할 것으로 보임.
- 페루는 잉카문명의 중심지로 옛 유적이나 유물이 수시로 발굴되는 나라인 바, 자원개발 프로젝트가 주로 벽지나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사적 유적을 훼손시키지 않을 것을 요구함.
- 페루는 전통적으로 사회주의적 영향이 강해서 皮雇傭者 위주로 노동법규를 운영하고 있는 바, 현지의 노동법규, 사회보장제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노사분규나 분쟁 등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야 됨.
- 수시로 노동부 공무원이 업체를 방문해 일하는 근로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급여 수준 및 지급 문제, 근로조건 문제,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을 체크하며 여기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문제를 발견할 경우 고용주는 높은 처벌을 받거나 벌금을 물어야 됨.
- 빈곤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을 볼 때 현지의 법은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정신이 지배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근로자와의 문제가 생기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외국인 고용주는 무조건 敗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지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관계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음 .

2008년 KOTRA 발간자료목록

●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한-EU FTA가 수출/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 유럽 바이어 및 대한 잠재투자가 설문조사 결과	2008.1
08-002	대중 섬유수입규제 해제와 세계 섬유시장의 변화	2008.1
08-003	일본 소비패턴 동향 및 시사점	2008.2
08-004	주목해야 할 이머징 마켓의 소비 패턴 변화	2008.3
08-005	아세안 주요국 프랜차이즈 산업 분석 및 진출 전략	2008.3
08-006	유럽 그린구매 동향과 진출확대를 위한 키워드	2008.3
08-007	한-GCC FTA 체결에 대한 시각 및 반응	2008.3
08-008	중국의 최저임금 인상 동향과 전망	2008.4
08-009	중동·아프리카 프론티어 시장 유망품목과 성공전략	2008.4
08-010	중남미 보안시장 동향	2008.4
08-011	중국·인도·일본의 아프리카 시장쟁탈전	2008.4
08-012	러시아기업의 해외진출확대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2008.4
08-013	2008 서남아시아를 주목하라	2008.4
08-014	미국 FDA 통관정책 및 우리 상품 통관거부에 대한 대응	2008.4
08-015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초안)의 해석	2008.5
08-016	해외 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국가별 유의사항	2008.6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년 지역별 진출확대 전략	2008.1
08-002	러시아 투자실무 가이드	2008.1
08-003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10대 판례집	2008.2
08-004	멕시코 투자실무 가이드	2008.4
08-005	청산매뉴얼	2008.5
08-006	중국지재권대리사무소 디렉토리	2008.5
08-007	중국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5
08-008	EU 현지 기업들의 REACH 대응사례와 시사점	2008.5
08-009	중국 신노동법 下 인력관리 매뉴얼	2008.5
08-010	2007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08.6
08-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07	2008.6
08-012	북미 유통시장 진출 가이드	2008.6
08-013	중국투자가 심층조사 보고서	2008.6
08-014	말레이시아 투자실무가이드	2008.6
08-015	2007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08.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08-001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08.1
08-002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비즈니스포럼	2008.1
08-003	2008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및 비즈니스 포럼 가이드북	2008.1
08-004	한-아세안 FTA순회설명회 (Korean -Asean FTA Seminar)	2008.5
08-005	몽골투자포럼(Mongol Korea Investment Forum)	2008.5
08-006	러시아 우랄시장 설명회	2008.5
08-007	극동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 및 상담회	2008.5
08-008	중국 사업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설명회	2008.5
08-009	중동 산유국 진출전략 설명회 및 상담회	2008.6
08-010	Global Project Plaza 2008	2008.6
08-011	한일 에너지절약환경 포럼	2008.6
08-012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3	러시아 중앙아시아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08-014	2008 한중일산업교류회 심포지움	2008.6
08-015	미국 유통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08.6

작성자

◆ 프로젝트진출팀 이상진

Global Business Report 08-016

해외 자원개발 피해사례 및 주요 유의사항

발행인 | 조환익
발행처 | KOTRA
발행일 | 2008년 9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8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